

DDP 키오스크 사용계약 해지 합의서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(이하 '임대인' 이라 한다)과 (주)아르코인터내셔널(이하 '사용자' 라 한다)은 DDP 키오스크 사용계약 해지를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.

- 아 래 -

1. '임대인' 과 '사용자' 는 2016년 10월 1일 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는 'DDP 키오스크 사용계약' 을 체결하였으나 '사용자' 의 요청에 의한 계약해지를 협의에 의해 합의 한다.(별첨1. 참조)
2. 계약해지 일자는 2017년 2월 1일로 한다.
3. 정산금액은 위의 제2조의 해지 일자로 미납금액을 일할계산하며(3%이자포함) 정산금액이 입금되어야 계약해지가 효력을 가진다.(붙임1. 해지정산내역합의서 참조)
4. '임대인' 과 '사용자' 는 본 해지합의서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들의 쌍방 합의에 의한 것으로 위 제1항의 모든 권리는 자동 소멸한다.

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부를 작성, 각 서명 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- 붙임서류 : 1. 해지정산내역합의서
2. 별첨1. DDP 키오스크 사용계약 해지 요청의 건 1부.
3. 별첨2. 합의 협상 회의록

2017. . .

임대인

사용자

상 호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

상 호 : (주)아르코인터내셔널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56-18 에메랄드B/D 2F

대표자 : 이 근 (인)

대표자 : 최 예 지 (인)

【붙임1】

해지정산내역합의서

사용시설	키오스크 7개소(K1, K3, K4, K5, K8, K9, K10)			
계약일자	2016년 08월 31일			
계약건명	DDP 키오스크 사용 계약			
계약기간	2016년 10월 01일 ~ 2017년 09월 30일			
사 용 료	1회차(10월~12월)	2회차(1월~3월)	3회차(4월~6월)	4회차(7월~9월)
	2016.09.21.(완납)	2016.12.15.(미납)	2017.02.15.(분납)	2017.05.15.(분납)
	10,929,600원	11,131,700원	11,175,700원	11,132,600원

-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‘사용자’는 ‘DDP 키오스크 사용계약’ 총 사용료 일금 사천삼백칠십일만팔천사백원정(₩ 43,718,400)(부가세포함)을 4회 분납하여 위의 조건으로 1회차를 2016년 9월 21일에 납부 하고 2차 납부 기일이 도래하였으나 합의 일자까지 미납되었기에 상호간에 계약해지일자를 합의하여 2017년 2 월 1 일부로 하며 정산금액은 일금 삼백팔십삼만사천이백육십원정 (₩ 3,834,260)으로 한다.
- 정산금액계산은 아래와 같다.
 ※정산금액 = 2회차미납원금(이자포함)일할계산 X 지연일수 31일
 (10원 미만의 단수의 경우 국고금단수계산방법 적용)
- ‘사용자’는 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원상회복 후 반환하면 ‘DDP 키오스크 사용계약’ 제2조 5항에 의거하여 반환 하도록 한다.
- 위 합의내용에 대하여 임대인과 사용인은 향후 민·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.

2017. . .

임대인

사용자

상 호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

상 호 : (주)아르코인터내셔널
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
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56-18 에메랄드B/D 2F

대표자 : 이 근 (인)

대표자 : 최 예 지 (인)